

스마트공장, MES 구축 정부과제 제재사유, 사업비 환수, 제재부가금 기준



관리지침 제41조(환수 및 제재부가금)

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반납·환수 금액에 대하여 즉시 중기부에 보고하여야 하며, 중기부는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. 사업비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사업비 잔액, 불인정 금액, 발생 이자, 기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등
2. 제재조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환수금액
3.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, 12조에 의한 제재부가금 및 제재부가금 가산금

②전담기관은 사업관계자 등이 유용·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환수법 제9조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

서 **제재부가금**을 부과·징수 할 수 있다. 이 때,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고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.

③사업비 관리 부실 등으로 정부지원금 환수에 따른 손해 등에 관하여는 사업의 최종 수혜자로서 관리의무가 있는 도입기업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. 단, 공급기업의 명백한 고의,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 합의, 조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.

④출연금 지원과제는 정산 및 환수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보조금 지원과제는 정산, 환수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다.

⑥전담기관은 귀책기관이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하여 국고 세입조치하여야 한다.

관리지침 제2조(적용범위) 이 관리기준은 "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", "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", "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" 등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되,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내용

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관리지침 제40조(제재 등) ④ 전담기관, 운영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수행기업, 수행관계자, 전문가 등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(일부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총액 내에서 제재조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액), 사업참여 제한,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3.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항목과 상이한 용도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

4. 사업의 참여 및 과제 수행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등 문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 등을 기망한 경우

6. 도입기업, 공급기업 등이 사업결과물 미제출, 유지관리의무 불이행, 로그기록 미제출, 존속기한 위반 등 법령, 관리지침, 세부관리기준과 협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

관리지침 별표 1 제재기준

2. 중징계(사업비 환수, 사업참여 제한 등 → 전담기관 조치)

구분	환수여부	환수금액	제재	후속조치
경고 3회 이상	-	-	참여제한 1년	-
사업 성과, 결과확인 등 조사 불응	-	-	경고	-
서면·현장점검 시정·보완요구 불응	-	-	경고	-
사업과 무관한 부당요구·지시, 강요	-	-	참여제한 “영구”	관련법
기타 세칙 미준수로 시정조치 필요	○	해당 금액	경고	관련법
완료보고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	-	-	참여제한 1년	-
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, 중단	-	-	참여제한 1년	-
제출서류 등의 거짓, 허위, 변조	○	해당 금액	참여제한 “영구”	관련법
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추진	○	해당 금액	참여제한 2년	관련법
특수관계자 거래	○	거래 금액	참여제한 2년	관련법
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위반	○	해당 금액	참여제한 2년	관련법
보조금의 목적외 사용(횡령, 유용 등)	○	해당 금액	참여제한 “영구”	관련법
기타 중대한 위반사항	○	해당 금액	심의결과에 따름	관련법

※ 직무정지 시 해당기간 수당 등 미지급(필요시 협약해약, 형사고발 등 추가조치)

행정소송, 이의신청, 소청심사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